제 10 장
운전면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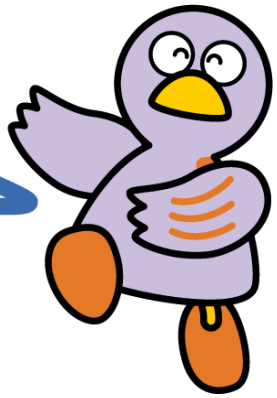

사이타마현의 마스코트 코바톤

1 외국면허 변경 신청
2 운전면허증, 마이나 면허증 갱신
3 운전면허시험
4 운전면허증 유효기한이 끝났을 때 필요한 수속
5 주소 등의 변경수속 신고
6 자동차 구입과 등록
7 자동차보험

일본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에는 일본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운전면허시험을 보거나 외국의 운전면허를 일본의 운전면허로 변경하는 심사를 받고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제네바조약 가맹국에서 교부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일본이 정령(내각에서 정한 명령)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역(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대만)의 운전면허증(일본어의 번역문이 첨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을 소지하는 분은 일본에 상륙한 날부터 기산하여 1 년간 해당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1 년 동안 유효한 경우에도 자국 면허증의 유효기간 내로 제한됩니다.

☎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접수시간 월~금 (공휴일·연말연시 제외)
사이타마현 경찰 운전면허센터	048-543-2001 (대표)	코노스시 코노스 405-4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휴일, 연말연시 제외)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1 외국면허 변경 신청

외국면허 변경이 가능한 외국에서 교부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은 취득한 후로부터 통산하여 3개월 이상 그 나라에서 살아야만 일본 운전면허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사이타마현 경찰운전면허센터입니다.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여권(패스포트)
-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등
- 주민표(전부 기재(개인번호 제외))
- 외국의 운전면허증
- 외국의 운전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각국 대사관 영사부, 또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지정한 법인
  【(일반사단법인)일본자동차연맹(JAF)、(주)지프러스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 사진(세로 3.0㎝×가로 2.4㎝) 2장
- 신청수수료

상기에 기재된 서류 외에도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이타마현 경찰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 전, 운전면허 센터에서 서류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서류 심사는 사이타마현 경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이 필요합니다. 서류 심사를 받지 않은 분의 면허 변경 신청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사이타마현 경찰 외국면허 변경]

2 운전면허증, 마이나 면허증 갱신

- 운전면허증·마이나 면허증 갱신은 갱신 기간(생일 전후 1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등의 유효 기간은 연령·운전 경력·위반 내용에 따라 3~5년입니다.
- (※1) 유효 기간은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갱신 절차 장소, 접수 시간, (※2) 신청 수수료, (※3) 지참물(운전면허증과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재류 기간 등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 중 어느 것)은 갱신 기간 직전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 엽서나 현 경찰 홈페이지를 잘 확인해 주십시오.

- 안내 엽서 등을 확인해도 모르는 점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고노스 경찰서 제외)나 운전면허 센터의 운영 시간에 문의해 주십시오.

※1) 마이나 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은 유효 기간 등을 전용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창구에서는 신청 수수료를 캐시리스 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캐시리스 결제가 어려운 분은 편의점 또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지불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번거로움이 따르므로 사전에 캐시리스 결제 수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이나 면허증 소지자는 제외됩니다.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은 외무성 등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와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지참물이 없는 분은 운전면허증 등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3 운전면허시험

(1)신청장소　　운전면허센터

(2)접수일시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평일(공휴일, 휴일・12 월 29 일부터 다음해 1 월 3 일까지 제외)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전 9 시 15 분까지 사이

※학과 시험의 일부 및 각 기능 시험은 사이타마현 경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이 필요합니다.

(3)필요서류 등 수험 대상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면허 신청서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등의 신분증명서

·주민표(전부 기재(개인번호 제외))

·사진(세로 3.0cm×가로 2.4 ㎝) 2 장～3 장

·신청수수료

(4)학과시험은 다음의 외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제 1 종면허, 제 2 종면허 및 가면허(20 언어)

영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베트남어, 아라비아어, 인도네시아어, 우크라이나어, 우르두어, 한국어, 크메르어, 신할라어, 스페인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힌디어, 페르시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러시아어로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면허(4 언어)

영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베트남어

4 운전면허증 유효기한이 끝났을 때 필요한 수속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고 유효기한이 지난 경우,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단, 유효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안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학과시험및 기능시험)을 면제하는 구제소치를 받아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면허증이 교부되기까지는 무면허이므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수속은 운전면허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분(갱신수속을 깜빡해서 못했던 분)

가. 면허증의 유효기한이 지난 지 6 개월 이내인 경우

일정수속에 의해 학과시험및 기능시험 면제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의 취득하고 있던 면허증의 운전경력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 면허증의 유효기한이 지난 지 6 개월을 넘어 1 년 이내인 경우

대형·중형·준중형·보통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졌던 분은 학과시험 및 기능시험 면제로 가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운전면허(대형 특수자동차, 자동이륜자등의 가면허가 없는 것)을 취득했던 분들은 구제조치가 없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분(입원·해외체재 등의 이유로 갱신수속을 할 수 없었던 분)

가. 면허증 유효기한이 지난 지 6 개월 이내인 경우

일정한 수속을 거치면 학과시험및 기능시험 면제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의 취득한 운전면허의 경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면허증 유효기한이 지난 지 6 개월을 넘어 3 년 이내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끝난지 1 개월 이내에 수속을 하면 학과시험및 기능시험 면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금까지의 운전경력은 유지됩니다.

(3) 필요서류 등

가. 접수 일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평일(공휴일, 12 월 29 일부터 다음해 1 월 3 일 제외) 오후 1 시부터 오후 1 시 45 분까지 사이

나. 필요 서류

① 유효기한이 지난 면허증
②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등
③ 주민표(전부 기재(개인번호 제외))
④ 사진(세로 3.0cm×가로 2.4 ㎝) 1 장(가면허 신청시는 3 장)
⑤「갱신 안내통지」 엽서(없어도 수속은 가능합니다.)
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분은 그 이유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여권 등)
⑦ 신청수수료

5 주소 등의 변경수속 신고

주소나 성명 등을 변경했을 때는 운전면허증, 마이나 면허증의 변경 신고가 필요하므로, 즉시 가까운 경찰서(고노스 경찰서 제외)나 운전면허 센터에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해 주십시오.

(1) 주소 변경에 필요한 서류

-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을 받는 분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재류 기간 등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 중 어느 것
-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
  외무성 등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와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

(2) 국적 등이나 성명 변경에 필요한 서류

-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을 받는 분
  재류 기간 등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
-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
  여권 등

※ 마이나 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은 변경 후의 마이나 면허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 주소 등의 변경 신고만 하는 경우,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 필요한 지참물을 잘 모르시는 분은 가까운 경찰서(고노스 경찰서 제외)나 운전면허 센터의 운영 시간에 문의해 주십시오.

6 자동차 구입과 등록

자동차의 구입, 폐차, 주소변경, 명의변경을 했을 때는 차종에 따라 다음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종	등록장소
보통자동차및 125cc 를 넘는 오토바이	관할 구역의 운수지국 또는 각 자동차 검사등록 사무소
경자동차(660cc 이하)	경자동차검사협회 사이타마사무소 또는 각 지소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거주지 관할관청의 주민세과 등

보통자동차를 구입, 등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명의변경의 경우)

- 양도증명서(구소유자의 실인이 찍힌 것)
- 신구소유자의 인감(실인) 혹은 실인이 찍힌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 신구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으로부터 3 개월이내의 것)
- 자동차보관장소 증명서(발행으로부터 40 일이내의 것)
- 자동차검사증(유효기간이 있는 것)

※번호판 변경이 수반되는 신청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더해 차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검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이 인감증명서와 다른 경우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주민표 등)이 필요합니다.

이사(주소변경)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표(발행으로부터 3 개월이내의 것)

※ 자동차검사증에 기재되어있는 주소로부터 현재까지 연계를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관장소 증명서(발행으로부터 40 일이내의 것)
-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각각 필요합니다.

- 자동차검사증

※번호판 변경이 수반되는 신청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더해 차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상담창구, 문의처

기관명	전호번호	주소	접수시간

관동운송국 사이타마 운송지국	050-5540-2026 서비스코드 037	사이타마시 니시쿠 오아자나카쿠기 2154-2	월~금 (공휴일, 연말연시제외) 8:45~11:45 13:00~16:00
구마가야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	050-5540-2027 서비스코드 037	구마가야시 미이즈가하라 지모토바야시 701-4	
도코로자와 자동차 검사등록사무소	050-5540-2029 서비스코드 037	도코로자와시 오아자 우시누마 시모하라코츠 688-1	
카스카베 자동차 검사등록사무소	050-5540-2028 서비스코드 037	카스카베시 오아자 마시토 723-1	

사이타마 운송지국 홈페이지 URL

https://wwwtb.mlit.go.jp/kanto/s_saitama/index.html

경자동차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명의 변경을 할 경우)

- 신사용자의 주민표(발행으로부터 3 개월이내)
- 자동차검사증
- 신청의뢰서(대리신청의 경우)

※ 번호변경의 경우 상기서류 이외에 자동차번호판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검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사전에 소유자(자동차 판매점이나 론 회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상담창구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접수시간
경자동차검사협회 사이타마 사무소	050-3816-3110	아게오시 오아자 히라가타 료우료우케아자마에 505-1	월~금 (공휴일·연말연시 제외) 8:45~11:45 13:00~16:00
경자동차검사협회 사이타마 사무소 도코로자와지소	050-3816-3111	이루마군 미요시마치 기타나가이360-3	
경자동차검사협회 사이타마 사무소 구마가야지소	050-3816-3112	구마가야시 니이보리아자 키타하라 960-2	
경자동차 검사협회사무소 카스카베지소	050-3816-3113	카스카베시 시모오마시신덴 히가시고우치115-1	

경자동차검사협회 홈페이지 URL

https://www.keikenkyo.or.jp/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구입 및 등록에 대해서는 각 관할 행정관청에 문의하십시오.

7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보험(강제 보험)과 자동차 보험(임의 보험)이 있습니다만, 책임보험뿐 아니라 만일의 배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의보험에도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1) 책임보험(강제보험)

자동차의 구입시나 자동차검사를 할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포함하여, 모든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이 보험은 자동차로 타인에 대해 사상사고를 입힐 경우에 대비한 것입니다. 또한 보상에는 한도액이 있으므로 한도액을 넘으면 책임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입수속은 주로 자동차판매점이나 자동차정비공장 등의 손해보험회사의 대리점에서 합니다.

(2) 자동차 보험(임의 보험)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상이나,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보상(타인의 재물 보상, 본인의 차량이나 부상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수속은 주로 손해보험회사 대리점 등에서 합니다.

☎ 상담창구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접수시간
(일반사단법인)일본손해보험협회 손포ADR센터	03-4332-5241	월~금 (공휴일·12월30일~1월4일 제외) 9:15~17:00 ※일본어로 대응 ※자동차 보험 가입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각 손해보험회사에 상담해 주십시오. 각 손해보험회사의 상담 창구 링크 https://www.sonpo.or.jp/soudan/reference.html

※방일, 재류외국인을 위한 정보제공사이트 「Information on Staying Safe in Japan」
https://living-and-ins.jp/ja/

<WebサイトQRコード>